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582 발의연월일: 2025. 1. 16.

발 의 자:이인선・박성훈・김위상

박상웅 · 정동만 · 조지연

박덕흠 • 조정훈 • 박충권

이양수 · 강명구 · 김기웅

최은석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자기자본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 지원을 위해 기재부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의 업무수행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, 이는 포괄위임규정으로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 타 보증기금과 같이 근거를 법률로 명시할필요가 있음.

이에 「신용보증기금법」 제23조의4, 「기술보증기금법」 제28조의4 와 같이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 를 법률로 명시하여,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5조 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35조의2에 따른 보증연계투자

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2(보증연계투자) ① 관리기관은 제35조에 따른 보증관계가 성립한 사업시행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(이하 이 조에서 "보증연계투자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- 1. 주식의 인수
- 2. 전환사채의 인수
- 3.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
- 4. 교환사채의 인수
- 5. 「상법」 제287조의8 또는 제556조에 따른 지분의 인수
- 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식
- ②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총액의 한 도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과 제33조제5항에 따른

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- ③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사업시행자등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그 밖에 보증연계투자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	제32조(기금의 용도)
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	
1. • 2. (생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u> </u>	2의2. 제35조의2에 따른 보증연
	<u>계투자</u>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35조의2(보증연계투자) ① 관리
	기관은 제35조에 따른 보증관
	계가 성립한 사업시행자등에
	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	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
	(이하 이 조에서 "보증연계투
	<u>자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</u>
	<u>1. 주식의 인수</u>
	<u>2. 전환사채의 인수</u>
	3.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
	<u>4. 교환사채의 인수</u>
	<u>5. 「상법」 제287조의8 또는</u>
	제556조에 따른 지분의 인수
	<u>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</u>
	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
	②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

로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총 액의 한도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과 제33조제 5항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
③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사업시행자등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그 밖에 보증연계투자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.